



임대주택에서 애완동물 보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까요?

선택 사항

-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애완동물 보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.
- 법원 또는 소비자보호국장으로부터 집주인이 면제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애완동물 보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세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애완동물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애완동물로 인해 훼손된 시설을 복구해야 한다.

의견을 알려주세요

-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?
-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까요?
- 애완동물 보유에 대한 세입자의 요청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?
- 세입자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경우, 이와 관련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차법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까요?

의견 개진 방법은 간단합니다!

의견 제출:



consultations@dmirs.wa.gov.au

주택임대차법(RTA)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:



www.commerce.wa.gov.au/tenancyreview



1300 304 054

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

Department of Mines,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

Consumer Protection

Advice Line 1300 304 054
(for the cost of a local call statewide)

8.30am – 5.00pm Mon, Tue, Wed and Fri

9.00am – 5.00pm Thurs

Gordon Stephenson House

Level 2/140 William Street

Perth Western Australia 6000

Administration: (08) 6251 1400

Facsimile: (08) 6251 1401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Online

Website: www.dmirs.wa.gov.au

Email: consumer@dmirs.wa.gov.au

Mailing address

Locked Bag 100

East Perth WA 6892

Regional offices

Goldfields/Esperance (08) 9021 9494

Great Southern (08) 9842 8366

Kimberley (08) 9191 8400

Mid-West (08) 9920 9800

North-West (08) 9185 0900

South-West (08) 9722 2888

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(TIS) 13 14 50

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ther formats
on request to assist people with special needs.

